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10월 5일 김미숙 의원 등 10인
- 나. 회부일자 : 2009년 10월 5일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15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9년 10월 14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김미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생활이 어려운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제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 골자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장제비 지원대상을 정함(안 제3조)
- 장제비 지원기준을 정함(안 제4조)
- 장제비 신청 및 지급방법을 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- 장제비 지원예산 확보 (안 제7조)

다. 예산수반

○ 연간 추정예산액 : 500천원 × 400명 = 200,000천원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정부지원 장제비 근거는?	○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 의함.
○ 집행부와 내년도 예산반영에 대 하여 협의는 하였는지?	○ 그러함.
○ 향후 장제비 지원대상자가 확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?	○ 현 추세로 본다면 많이 늘어나 지는 않을 것으로 봄.
○ 현 제도하에서 수급자에게 새로 운 지원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수급 자에서 탈피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?	○ 공감함. (이상 김미숙 의원)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급자들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지원 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제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"(이하 "수급자"라 한다)란 「국민 기초생활보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 를 말한다.
 - 2. "장제비"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·운반·화장 또는 매장, 그 밖에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말한다.
- 제3조(장제비 지원대상) 장제비는 사망 당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.
- 제4조(장제비 지원기준) ① 장제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.
 - 1.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1명당 50만원 지원
 - 2.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1명당 40만원 지원
 - ② 수급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「산업재해보상보

험법」제48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 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4조에 의한 장제급여는 차감하지 아니한다.

- 제5조(장제비 신청) 장제비 신청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」 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18조에 의한 장제급여 신청으로 갈음한다.
- 제6조(장제비 지급절차) 장제비 지급절차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장제급여 지급절차를 준용한다.
- 제7조(지원예산 확보) 시장은 매년 장제비 지급을 위한 비용을 추정하여 다음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.
- 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조례안

의 번	안 호	제482호
의 년	결 일일	2009. 11. 23. (제157회)

발의년월일 : 2009. 10. 5.

발 의 자 :김미숙의원등10인

1. 제안 이유

생활이 어려운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제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 골자

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장제비 지원대상을 정함(안 제3조)

다. 장제비 지원기준을 정함(안 제4조)

라. 장제비 신청 및 지급방법을 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
마. 장제비 지원예산 확보 (안 제7조)

3. 제정 조례안 : 별 첨

4. 관계법령 : 별 첨

5. 예산수반 상황 : 2010년도 본예산 반영 조치

○ 추정예산액(연간): 500천원 × 400명 = 200,000천원

6. 기타 참고자료
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(사망자) 연령별 현황

(단위 : '								: 명)				
연령별 년도별	구별	계	1~1 0세	11~ 20세	21~ 30세	31~ 40세	41~ 50세	51~ 60세	61~ 70세	71~ 80세	81~ 90세	91세 이상
2006	합계	311	1	7	1	9	44	49	41	81	59	19
	원미	145		2	1	4	18	22	22	35	30	11
	소사	82	0	3	0	1	17	18	10	18	12	3
	오정	76	1	2	0	4	9	9	9	25	16	1
	시설	8								3	1	4
2007	합계	403	3	0	3	17	64	72	81	67	73	23
	원미	188			1	8	30	34	35	33	36	11
	소사	111	3	0	1	5	19	20	26	19	12	6
	오정	90	0	0	1	4	15	18	20	11	19	2
	시설	14								4	6	4
2008	합계	325	0	2	3	13	54	49	48	66	69	21
	원미	169		1	2	6	30	27	22	34	36	11
	소사	79	0	0	0	4	10	13	19	16	13	4
	오정	72	0	1	1	3	14	9	7	16	17	4
	시설	5									3	2

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급자들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지원 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제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이하 "수급자"라 한다)"란 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.
 - 2. "장제비"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·운반·화장 또는매장, 그 밖에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말한 다.
- 제3조(장제비 지원대상) 장제비는 사망 당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.
- 제4조(장제비 지원기준) ① 장제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.
 - 1.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1명당 50만원 지원
 - 2.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1명당 40만원 지원
 - ② 수급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「산업재해보상보

험법 제48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 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는 차감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장제비 신청) 장제비 신청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18조에 따른 장제급여 신청으로 갈음한다.

제6조(장제비 지급절차) 장제비 지급절차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장제급여 지 급절차를 준용한다.

제7조(지원예산 확보) 시장은 매년 장제비 지급을 위한 비용을 추정 하여 다음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조례안

찬 성 의 원 서 명 부

의원성명	서 명	의원성명	서 병
\$ FL 01	1500		
スタラセスリ	- men		
oxpor D	fill		
32 Day	F3		
I tapes	1-		
2 00 21	Ci		
70 76 3	1000		
In & re	sur		
12 5m	23		

《관계법령 발췌서》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 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5.17>

- 1. (생략)
- 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- 가. ~ 다.(생략)
- <u>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부녀(부녀)의 보호와 복지증</u>진
- 마. ~ 차. (생략)

□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

제5조 (수급권자의 범위)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.
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 로 본다. <개정 2008.2.29>
-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제7조 (급여의 종류)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- 1. 생계급여
- 2. 주거급여
- 3. 의료급여
- 4. 교육급여
- 5. 해산급여
- 6. 장제급여

7. 자활급여

- ②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한다.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12.28>
- ③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(이하 "차상위자"라 한다)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범위 안에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·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차상위자에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06.12.28>
- ④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06.12.28>

제14조 (장제급여) ①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·운반·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. ②장제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. 다만,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

제5조의3 (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) ①<u>법 제7조제3항</u>에 따라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로 한다.

- ②제1항에 따른 장제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 와 같다. <개정 2008.2.29>
- 1. 지급대상 : 차상위자 중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치르는 자2. 지급금액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비 이상의 금액으로 하되,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③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, 취업상태 및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.

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제급여와 자활급여의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<u>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</u>다. <개정 2008.2.29>

[본조신설 2007.6.28]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

제18조 (장제급여의 신청)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장제급여지급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. <개정 2007.6.29>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.

□산업재해보상보험법

제5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업무상의 재해"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.
- 2. "근로자"·"임금"·"평균임금"·"통상임금"이란 각각 <u>「근로기</u> 준법」에 따른 "근로자"·"임금"·"평균임금"·"통상임금"을 말한다. 다만, <u>「근로기준법」</u>에 따라 "임금" 또는 "평균임금"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해당 "임금" 또는 "평균임금"으로 한다.
- 3. "유족"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(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)·자녀·부모·손자녀·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. 4. "치유"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. 5. "장해"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
- 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.

제37조 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)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·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 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. 다만,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(상당인과관계)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

- 1. 업무상 사고
- 가.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나.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
- 다.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
- 라.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
- 마.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
- 바.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
- 2. 업무상 질병
- 가.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·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 되어 발생한 질병
- 나.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- 다.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
- ② 근로자의 고의·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아니한다. 다만, 그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.
-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**제48조 (전원 요양)**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다.
- 1.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·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아니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 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
- 2.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
- 3.<u>제43조제1항</u>제2호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
- 4. 그 밖에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요양 중인 근로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단에 전원(전원)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.